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2026. 3.

목 포 해 양 경 찰 서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6호의 관련 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등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 법령 변경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근거 법령이「해상교통안전법」변경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다.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 월 ○ 일

목 포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위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목포항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목포시	개항	<p>영암군 현대삼호부두 남동쪽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6도 23분 06초 지점에서 아래 "1"부터 "3"까지, "4"부터 "10"까지 "11"부터 "13"까지 "14"부터 "15"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중 "16"부터 "17"까지 "18"부터 "19"까지 연결한 선내의 안측 수역을 제외한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2.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3.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4.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5. 달라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6.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 46분 55.20초, 동경 126도 20분 19.73초 7.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8.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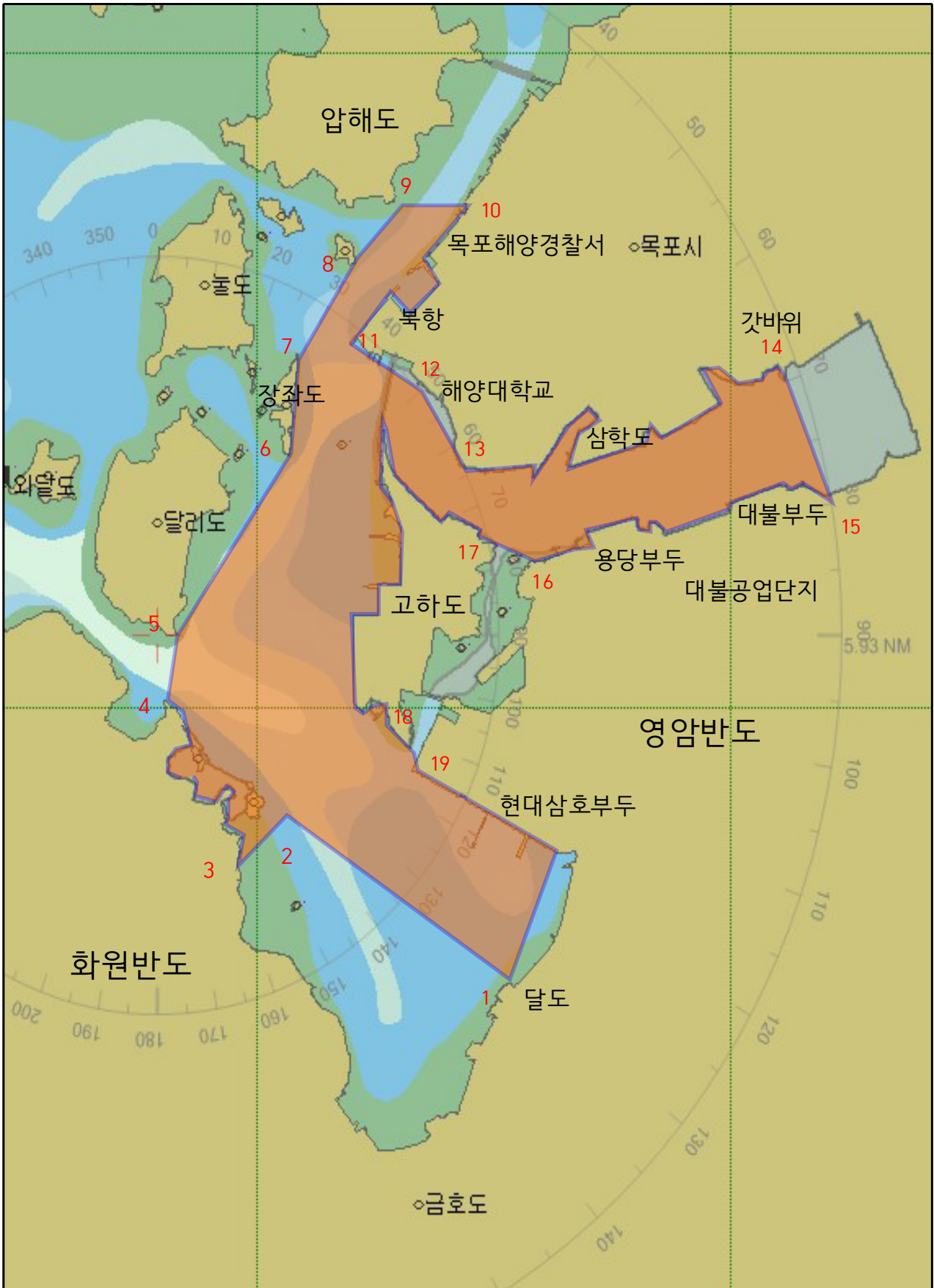
				9.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10.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11. 북항개발지구 남서단 북위 34도 47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12. 해양대 앞 해상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21분 34초
				13. 온금동 남끝단 북위 34도 46분 51초 동경 126도 22분 09초
				14. 입암산 남동끝단 북위 34도 47분 32초, 동경 126도 25분 33초
				15. 대불부두 남동단 북위 34도 46분 37초 동경 126도 25분 58초
				16. 불당산 북서끝단 북위 34도 46분 7초 동경 126도 22분 54초
				17. 고하도 북동끝단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22분 32초
				18. 허사도 남동끝단 북위 34도 44분 42초 동경 126 21분 38초
				19. 가지도 남서끝단 북위 34도 44분 31초 동경 126도 21분 39초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6호는 폐지한다.

목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구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p>	<p>「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구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p>
<p>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u>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u>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2. 종전의 <u>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0-04</u>호는 폐지한다.</p>	<p>1. ~ 2. 종전의 <u>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3-06</u>호는 폐지한다.</p>